

창원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1가단11325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염영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수경

변론 종결 2021.12.15.

판결 선고 2022. 1.26.

주 문

1. 피고와 B의 소외 C에 대한 2019. 2. 22. 매매계약상 잔금채권 중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3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1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B의 소외 C에 대한 2019. 2. 22.자 매매계약상 잔금채권에 관한 피고와 B사이의

증여계약 106,000,000원을 취소한다(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사실과 대비할 때 이와 같이 선택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다음 표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회사는 이를 담보로 표2 기재 대출을 받았다.

<표1. 보증내역>

1	E	450,000,000	2015. 3. 27.	2019. 3. 22.	기업운전일반 자금대출	F은행 김해중앙지점
2	G	108,000,000	2015. 9. 23.	2019. 9. 20.	기업운전일반 자금대출	H은행 I금융센터
3	J	99,000,000	2016. 3. 16.	2019. 3. 14.	기업일반 자금대출	K은행 진영지점
4	L	90,000,000	2016. 3. 23.	2021. 3. 22.	기업운전일반 자금대출	F은행 김해중앙지점
5	M	704,000,000	2017. 9. 22.	2019. 9. 20.	기업운전일반 자금대출	H은행 I금융센터

<표2. 대출내역>

E	450,000,000	F은행 김해중앙지점	2015. 3. 27.	500,000,000
G	108,000,000	H은행 I금융센터	2015. 9. 23.	120,000,000
J	99,000,000	K은행 진영지점	2016. 3. 16.	110,000,000
L	90,000,000	F은행 김해중앙지점	2016. 3. 23.	100,000,000
M	704,000,000	H은행 I금융센터	2017. 9. 22.	880,000,000

(2)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B는 소외회사의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소외회사가 위 각 신용보증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3) 위 각 신용보증약정내용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의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보증기간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 소정의 이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기간에 따른 위약금을 부담하기로 정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소외회사는 2019. 3. 6. 당좌부도 등으로 인하여 위 각 대출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각 금융기관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다음 표3 기재와 같이 각 금융기관에게 대위변제하였다.

〈표3. 대위변제내역〉

E	2019. 4. 10.	450,000,000	3,869,999	453,869,999
G	2019. 4. 15.	96,000,000	681,100	96,681,100
J	2019. 4. 16.	99,000,000	617,108	99,617,108
L	2019. 4. 10.	48,750,006	400,684	49,150,690
M	2019. 4. 15.	704,000,000	4,994,735	708,994,735
합계		1,397,750,006	10,563,626	1,408,313,632

(2) 원고의 지연손해금율은 최초변제일인 2019. 4. 10.부터 현재까지 연 8%이다.

(3)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7,057,33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원금에 충당함으로써 대위변제금 잔액은 1,401,256,302원, 확정지연손해금은 9,280원, 미수위약금은 831,870원이다.

(4) 따라서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1,402,097,452원(1,401,256,302원+9,280원+831,870원)과 이에 대한 각 일부 대위변제일 해당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이자이다.

다. 피고·B 및 C·N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대금지급 등

(1) B와 피고는 2014. 10.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각 1/2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9. 2. 22. 소외 C, N에게 매매대금 79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대금 중 계약금 80,000,000원은 계약체결일 및 같은 달 25. 피고가 전액 수령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소외 (주)K에 대한 대출채무금 278,000,000원은 매수인들이 승계하여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며, 중도금 220,000,000원은 같은 달 25.에 지급하고, 잔금 212,000,000원 역시 같은 날 지급하기로 각 약정하였으되, 그 중 잔금 212,000,000원은 피고가 전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는 조건으로 하여 그 보증금지급채무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매매계약체결이후에도 C 등과 사이에서 보증금 212,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212,000,000원을 2019. 2. 25. 수령한 셈이 되며,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B 및 피고의 공유이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 C, N 공유명의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로 경료되었다.

(3)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B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당시 매입자금을 위하여 소외 주식회사 K로부터 돈을 빌린 후 그 차용금을 담보한 채권최고액 258,500,000원의 근저당채무(건물부분은 2016. 2. 11. 추가 설정), 2016. 12. 16.자 B가 같은 은행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으면서 설정해 둔 채권최고액 49,500,000원의 근저당채무, 2018. 9. 4. 소외회사 명의로 대출받았던 채권최고액 220,000,000원의 근저당채무가 있었고 이 중 일부는 이 사건 매매로 말소되거나 일부는 C, N가 면책적 채무인수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B의 무자력 등

(1)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황으로서(다툼없다), 이 사건 매매로 말미암아 매매대금채권만 유일한 적극재산으로 존재하였다.

(2) 원고는 2019. 2.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면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은 이후 그 본안의 소로서 C, N를 공동피고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단105915호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4. 27. C 등의 선의매수인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되었다(이 판결에서 매수인인 C, N의 잔존 융자금채무 면책적 인수를 전제사실로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통없는사실, 갑1~10호증, 을1~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 B에게는 이 사건 매매대금의 잔금 채권 외 별다른 채권이 없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계약금 80,000,000원을 그대로 수령하고, 융자금채무도 공동채무자로서 면제받으면서 잔금 212,000,000원도 피고가 수령하여 보증금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중 1/2인 106,000,000원을 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피고와 B 사이의 위 금액 상당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동액 상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잔금채권 중 36,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790,000,000원 중 피고의 지분은 그 1/2인 395,000,000원이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계약금 80,000,000원을 단독으로 취득하였다.

③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융자금채무로는 B와 피고가 기 설정해 둔 소외 (주)K에 대한 근저당부대출채무 3건인데 이를 모두 합한 잔존금액이 278,000,000원으로서 이를 매수인인 C, N가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그 중 피고의 지분인 139,000,000원을 면제받은 수익을 얻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O의의 채권최고액 258,500,000원 부분은 채무명의만 B일뿐 피고도 공동채무자인 점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면서 나머지 2건의 채무는 피고의 채무금이 아니라고 항쟁하나, 피고가 제출한 각종 금융자료 등 증거들은 피고 명의로 설정된 은행계좌 내역도 상당하여 B·소외회사의 채무와

피고의 채무 사이 준별이 어려우며, 게다가 일응 부동산의 공유권자는 권리뿐 아니라 채무도 균분의 지분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근저당권설정 자체를 B의 지분에 관하여만 설정한 것이 아닌 이 사건에 있어서 달리 피고가 나머지 2건의 근저당채무에 관하여는 면책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일응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3건의 278,000,000원은 B외 피고도 같이 균분으로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매매대금 중 220,000,000원을 B이 단독으로 수익하여 이를 소외회사의 운영자금을 위하여 기차용하였던 자녀 P, 배우자 Q에게 변제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⑤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잔금을 보증금채무지급금212,000,000원으로 총당하여 결과적으로 잔금212,000,000원은 피고 단독 명의로 수익하였다.

위 ①~⑤을 합하면,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 790,000,000원 중 B은 그 지분인 395,000,000원에서 359,000,000원(139,000,000+220,000,000)만을 수령하여 36,000,000원을 부족하게 받은 반면, 피고는 그 지분 395,000,000원에서 36,000,000원을 초과한

431,000,000원(80,000,000+139,000,000+212,000,000)을 단독 수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의 B 지분395,000,000원 중 36,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달리 피고가 선의라고 볼 만한 주장입증도 없으므로 이 잔금 중 36,000,000원에 관한 증여는 B의 총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자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 인정되고, B에 대한 14억 원 상당의 구상금채권이 있는 원고가 이 점을 주장하면서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 청구부분은 위 인정의 36,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에 한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나아가 그 원상회복으로서는 가액배상으로 명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B의 이 사건 매매계약상 C에 대한 잔금채권 중 피고와 B 사이에서 체결된 36,000,000원 부분에 관한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한다.

판사예지희

별지